

20.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167호 1999. 5. 17.

1.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정령(안)

개 정 이 유

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제고와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·공포(1999. 3. 31. 법률 제5,957호)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상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부동산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선됨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수수료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개법인의 임원중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도록 한 것을 3인 이상으로하여 임원요건을 완화함.
- 나.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승인제가 신고제로 개선됨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 절차를 정함.
- 다. 중개법인이 중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와 거래계약서상에 법인의 대표자(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)와 당해 중개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날인하도록 하여 중개책임을 명확히 함.
- 라. 중개업자 등에 대한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은 폐지되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전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개선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교육기관을 지정

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.

다. 중개업자의 협회설립 및 가입이 자유롭게 개선됨에 따라 협회의 회원등록절차·대의원의 수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의 보고의무를 간소화함.

2.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개정령(안)

개 정 이 유

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부동산중개업허가제도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제로 개선됨에 따라 등록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정함.
- 나.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 및 해고할 경우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둘 경우에는 중개보조원명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토록 함.
- 다.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으로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허가관청에 승인신청하던 것을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함.
- 마.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전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개선됨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정하고,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서류 및 지정절차를 정함.

주택회보